
입 법 정 보

2017-24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 회 사 무 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5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5
3.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5
4.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6
5.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6
6.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6
7.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7
8.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7
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8
10.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9
1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
12.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
13.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
1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12
15.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3
16.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5
1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5
1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6
1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권익위원회)	17
20.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19
21.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20
22.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21
2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1
24. 군표창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21
2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22
26.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3
27. 뇌연구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
28.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
2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26

30.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26
3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27
3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28
3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29
3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30
3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30
3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31
3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32
3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33
3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33
40.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34
4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34
4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35
4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36
4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36
45.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37
46.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38
4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38
48.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39
49.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40
50.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40
51.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41
5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41
53.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42
54.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42
55.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43
5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44
57.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4
5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45

59.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46

1.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 예고일자 : 2017. 12. 11. • 마감일자 : 2017. 12. 14.
-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정원 1명(7급)을 증원하고, 해당인력을 임기제로 운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총액인건비제를 통한 정원 1명 증원 및 임기제 임용 근거 신설(안제22 조제9항 등)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12. 11. • 마감일자 : 2018. 01. 22.
- 현행「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상 농산물, 농산가공품의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수산가공품과 달리 농산가공품은 원·재료의 비율, 성분함량 등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지원 대상 등에 이견이 발생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농산가공품 기준 신설(안 제2조, 제15조)
 -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상 수산가공품과 달리 농산가공품은 원·재료의 비율, 성분함량 등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 가공식품까지 포괄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2) 농산가공품의 기준을 현행 수산가공품과 같이 농산물을 원·재료의 50% 이상 사용한 경우로 정하고, 그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 다만, 지리적표시의 경우 지리적 특성, 지역의 명성에 기인한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농수산가공품 기준 적용에서 제외함

3.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12. 11. • 마감일자 : 2018. 12. 18.
-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중 물량기준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17.12.31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018년도 특별긴급관세 부

과대상 및 기준발동물량을 새로 규정하려는 것임

- 미곡류 16개 품목의 기준발동물량을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 등을 감안하여 새로 정하려는 것임

4.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12. 11. • 마감일자 : 2017. 12. 18.
- ' 18년 예산에 안보비목이 신설됨에 따라 안보비목을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과 정부구매카드 관련 국고금 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내용 등을 부령에 규정하기 위함임
- 가. 관서운영경비의 건당 500만원 초과지급 대상 경비 및 현금지급 대상 경비에 안보비 포함
나. 직불카드 등의 정부구매카드 사용근거를 마련한 국고금관리법 개정 및 비목명 변경 등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5.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12. 11. • 마감일자 : 2017. 12. 14
- ' 18년 예산에 안보비목이 신설됨에 따라 안보비목을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과 정부구매카드 관련 국고금 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내용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기 위함임
- 가. 안보비를 관서운영경비 및 회계연도 시작 전 관서운영경비 교부 대상 경비에 포함
나. 직불카드 등의 정부구매카드 사용근거를 마련한 국고금관리법 개정 및 비목변경 등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6.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12. 11. • 마감일자 : 2017. 12. 18.

-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한편,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수행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강남지청 등 20개 지방관서의 부정수급 업무를 고용관리과 또는 지역협력과로 일원화하는 등 기능조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7.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12. 12. ● 마감일자 : 2017. 12. 18.
- 전자비자 발급, 체류 전자민원 처리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둔 전자비자센터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공포·시행)됨에 따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전자비자센터의 존속기한 연장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외부의 우수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5급 정원을 1명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8.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12. 12. ● 마감일자 : 2018. 01. 22.
- 가. 국민들의 법령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할 필요가 있고,
나. 고용노동부 등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범죄사건부를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변경(안 제33조, 제71조, 제82조, 제85조, 별지 33호 서식)

본 집무규칙 조항 중 “수진” 을 “진료” 로, “수진율” 을 “진료
률” 로, “체포·구속인 수진부” 를 “체포·구속인 진료부” 로,
“수진일시” 를 “진료일시” 로 각 개정함

나. 범죄사건부를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
(안 제71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본 집무규칙 제71조의2(장부와 비치서류의 전자화) 제1항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에 준하는 시스템(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에 따른 형
사사법정보시스템에 준하여 그 작성·저장·관리 기능이 구현된 것으
로서 시스템의 각 기능 및 운영 상황 등에 대해 검찰총장이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으로부터 점검받은 시스템을 의미한다)
을 갖춘 특별사법행정기관은 제71조 제 1항 제1호의 범죄사건부를 전
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범죄사건부에 대해서는 제71조 제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는 규정 및 제2항 “제1항의 경우 전자장부
와 전자 비치서류는 종이장부와 서류의 개별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
다.” 는 규정을 각 신설함

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2. 12. ● 마감일자 : 2017. 12. 26.
-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분양시 분양사업자의 편법분양 및 위법행위 방지
등을 위한 관리 감독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등을 내용으로 「건축물
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934호, 2017. 10. 24. 공포, 2018.
1.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안 제13조 및 별표)
법 제9조의3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보고를 하지 않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 추가

10.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2. 12.
- 마감일자 : 2018. 01. 22.

○ 건축자산 진흥구역 시행계획의 수립 기한 변경,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 위원회의 공동 심의 의무화, 한옥 건축물에 대한 특례 보완 등을 내용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869호, 2017. 8. 9. 공포, 2018. 2. 1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지원을 받은 우수건축자산의 증개축 및 철거 등에 대한 시 도지사의 허가 불허가 처분의 기한을 설정하고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에 관한 지원 심의 시 광역 기초 지자체 간의 중복 심의를 단일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 및 한옥 건축물에 대한 일부 특례를 신설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지자체의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내용 및 국토부 제출 기한 변경
(안 제3조)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내용 중 과거 시행계획 성과,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및 사업계획 등을 현행 매년 작성에서, 5년 주기 수립에 맞춰 작성하도록 하고, 시 도지사 의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국토부에 대한 제출기한을 현행 매년 3월 말에서 시행계획 수립 후 60일 이내로 변경함

나. 지원을 받은 우수건축자산 증개축 및 철거 등에 대한 시 도지사의 허가 불허가 처분 기한 설정(안 제9조)

조세 감면이나 보조 용자 혹은 관계 법령의 특례를 받은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자산에 대해 증개축 및 철거 등의 허가를 신청할 경우 시 도지사의 허가 불허가 처분 기한을 60일 이내로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금지 혹은 제한 가능한 영업 시설 기준 구체화(안 제13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의 설치를 금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지자체 조례로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 타 영업 시설의 설치를 금지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시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 의무화(안 제14조)

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시에도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의무화 함

마.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폐율 완화 특례의 실효성 확보 및 건축법 일부 특례의 완화 범위 제시(안 제16조)

법 제21조제1항제1호,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서 기존 건폐율 완화 특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도시지역 내 건폐율 완화를 위한 기부채납 의무를 면제하고, 도시지역 외에서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일괄적으로 건폐율 완화 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지자체 조례로 건축자산에 대한 건폐율 완화 한도를 최대 90%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특례인 건축법 제46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완화 범위를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로 명확히 제시함

바.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심의 시 광역 기초 지자체 간 중복 심의 단일화 근거 마련(안 제18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위해 기술 보조금 등의 지원을 해당 지자체에 신청할 경우 광역 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중복해서 받지 않고 광역지자체 심의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유도 하되 심의 전에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여 심의하도록 함

사. 한옥에 대한 관계법령의 특례 적용기준 신설(안 제19조 및 별표 2)

법 제26조 제6호에 따라 한옥에 대한 특례 법령의 나열 항목에 기존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외에 민법을 추가하고,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한옥 다락의 기준, 민법에 따른 건물과 경계선 간

의 최소 50cm 이격 의무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함

1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2. 12. • 마감일자 : 2018. 01. 22.

- 현행 건축자산 기초조사 서식이 기초조사의 각 단계와 무관한 획일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불필요한 내용의 중복 작성 및 인력 예산 낭비를 유발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건축자산 기초조사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
건축자산(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기초조사 서식을 각각 목록조사, 기본조사, 심층조사의 세부분으로 재구성하여 건축자산 가치에 따른 각 조사 단계별 기록이 가능하도록 변경

12.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12. 12. • 마감일자 : 2017. 12. 19.

- 국립대학의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 각급 학교 관리운영직군 중 자연 감소된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교육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일반직 정원의 직렬을 조정·재배치하는 한편, 2017년도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운영정원 변동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 퇴직 등 결원 발생에 따른 정원 조정(별표1)
 -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70명 (6급 2명, 7급 3명, 8급 2명, 9급 63명)
 - 일반직 간 직렬 조정 : 18명 (6급 5명, 7급 3명, 8급 1명, 9급 9명)
- 나. ' 17년도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직급 조정(별표1의2)

- 12개 대학 20명(일반직 17명, 관리운영직군 3명) 직급하향 반영
다. 정원 조정에 따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한 국립 각급 학교별 정원 현
행화(별표3)

13.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12. 12. • 마감일자 : 2018. 01. 22.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은 도서·벽지의 의무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리
경제적·사회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간, 낙도 등을 도서·벽지
로 지정·지원함을 규정하고 있음.
실제로는 의무 교육 외 기관도 도서·벽지로 지정하고 있으며, 신설
학교는 시행규칙 아닌 교육부고시에 분리 지정되어 있으므로 도서·
벽지 지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시행규칙 별표의 도서·벽지를 ①의무교육 기관과 ②기타 기관으로
구분하고, 교육부고시에 반영되어 있는 3개 교육기관을 시행규칙에 반
영하는 등 도서·벽지 지정 목록을 정비(안 별표)

1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12. 13. • 마감일자 : 2018. 01. 22.
-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 관련 기준의 완화하고, 단위수협
여성임원 선출 적용비율 확대 및 조합장 중임제를 도입하는 한편, 어
촌계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어업인이면 누구나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수산물가공수협의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 완화(안 제3조)
- 「수협법」상 수산물가공 수협에 수산물가공업명과 지역명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나. 단위수협 여성임원 선출 적용 비율 확대(안 제46조제8항)

-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 및 지원을 위해 단위수협의 여성임원 선출 적용비율 확대(30→20%)

다. 조합장 중임제도(상임 2회, 비상임 1회) 도입(안 제50조제1항)

라. 어촌계 설립인가 등 중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근거 마련(안 제115조의2부터 제115조의12까지)

- 어촌계 가입자격 완화, 어촌계 감사제도 및 어촌계 지원센터 설립·운영 근거 마련

15.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12. 13. • 마감일자 : 2018. 01. 22.

○ 「아동복지법」 개정(' 17.10.24.공포, ' 18.4.25.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장기결석 학생 등 정보 공유 및 학교 적응지원 업무 수행기관 지정 내용 규정(안 제23조의2 신설)

- 공유 가능한 장기결석 학생 등의 정보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에 6일 미만으로 출석한 유아 정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취학관리 전담기구가 관리하는 정보로 하고, 교육부장관은 정보 공유 시 「초·중등교육법」상 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학대피해 학생 등의 학교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업무의 범위를 규정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기관 규정 삭제 (안 제26조제4항 삭제)

-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기관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대상, 내용 방법 등 규정 (안 제26조의2 신설)

-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대상에 공직유관단체 등을 추가하고, 교육기

관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복지 관련 기관 및 사회복지법인 등을 추가하는 한편,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용으로 아동인권, 아동학대 관련 법령 등을 포함하고 교육방법은 매년 1시간이상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상 정보제공 요청기관 및 요청방법 등 규정(안 제26조의3 개정 및 제3항 내지 제7항 신설)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상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건강가정지원센터 등)하고, 정보 제공 요청 목적 및 필요한 정보(피해아동 지원내용 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함

□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기관 및 요건, 내용 및 절차 등 규정(안 제26조의9 신설)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기관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추가하고, 피해아동이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국가가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정을 규정함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기준 및 절차 등 규정(안 제26조의10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기준을 위반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등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 구성 운영 등 규정(안 제45조의2 신설)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위원의 자격 및 제척 회피 사유, 사례전문위원회 회의결과의 제한적 공개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 연차보고서 작성절차 및 방법 등 규정(안 제55조의2 신설)

-연차보고서를 작성할 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복지 관련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함

16.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12. 13. • 마감일자 : 2018. 01. 22.
- 아동복지법」 개정(' 17.10.24.공포, ' 18.4.25.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 규정(시행규칙 안 제13조의2 제1항, 제2항 신설)

1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2. 13. • 마감일자 : 2018. 01. 22.
- 자산·소득기준 초과 입주자에 대한 재계약 거절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하고 불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주택 특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4851호, 2017.8.9 공포, 2018.2.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고령자·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등 주거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 주거약자용 공공임대(영구,국민,행복)의 입주자선정시 중증장애인가점근거 마련(안 제23조)
 -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부양가족수,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나, 장애등급도 고려하도록 하여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
- 나. 소득 또는 자산 기준 초과 입주자에 대한 재계약 거절 근거(안 제25조의2)
 - 개정 법률에서 소득 또는 자산 요건 초과 임차인에 대한 재계약 요건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시행규칙에 재위임 조항 신설

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 등 (안 제49조의8)

-불법 양도·전대자에 대한 입주자격제한 기간을 4년으로 명시하고 명단관리, 소명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라.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1순위 입주자격을 차상위 고령자까지 확대(안 별표 3)

-중위소득 40% 이하 고령자는 영구임대 일반공급 1순위인 생계 의료수급자 자격으로 상당 지원되고 있으므로, 타 계층과의 형평성, 입법례를 감안하여 중위소득 50% 이하 고령자에게 영구임대 일반공급 1순위 자격 부여

마.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영구·국민임대 공급시 무주택세대주요건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완화(안 별표 3, 별표 4)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에 따라 노부모와 세대주·세대원이 동거하는 경우, 사실상 세대주·세대원 모두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영구임대 일반공급(1순위), 국민임대 우선공급시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세대주 요건을 세대원으로 완화

바. 부모-자녀세대의 동일 국민임대 단지 거주 지원(안 별표 4)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부모세대의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해 부모와 자녀세대가 동일한 공공임대단지 내에 거주 할 수 있도록 유도

1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2. 13. • 마감일자 : 2018. 01. 22.

○ 자산·소득기준 초과 입주자에 대한 재계약 거절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하고, 불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주택 특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851호, 2017.8.9 공포, 2018.2.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 소득 또는 자산 기준 초과 입주자에 대한 재계약 거절 근거(안 제 47조)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자산 또는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 등 기준

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률로 이동한 재계약 거절 조항을 삭제하고 법률 위임규정에 맞게 조문 정리

- 나. 불법 양도·전대자 적발시 후속조치를 위한 위탁규정 정비(안 제61조)
 - 거주실태조사 중 불법 양도·전대자 적발시 후속조치에 대한 사항까지 공공주택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위탁규정 정비
- 다. 전산관리지정기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 (안 제63조)
 - 불법 양도·전대자의 입주자격 제한 관련 업무를 위해 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1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국민권익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12. 13. • 마감일자 : 2018. 01. 05.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공직사회 뿐 아니라 기업, 사회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변화와 반부패 효과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확산되고 있으나, 전문연구기관 관계부처등의 연구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법 시행 이후 한우, 화훼와 같은 농축수산물에 대한 영향이 여전히 관찰되고 있어 한우 화훼 등의 농축수산물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동시에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감안하여 경조사비 상한액을 하향함으로써 청렴의지를 강화하고자 하며,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은 사용내역 추적에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함.

또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직급별 구분 없이 최고 상한액만 설정하고, 학교간(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언론사간(일반 언론사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례금 상한액을 동일하게 설정하며,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사항 간소화, 보완 신고 기간 연장,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부담 완화 등의 정비를 통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 경조사비 선물 가액 범위 조정(제17조 관련 별표 1)

- 1) 경조사비 가액범위는 공직자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한 사회를 향한 의지를 감안하여 축의금 조의금을 5만원으로 하향하되,

화훼농가를 배려하여 화환 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함

- 2) 현행 선물 상한액 5만원을 유지하되, 농수산물 배려 차원의 가액 범위 조정 취지가 반영되도록 농수산물 선물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함
- 3) 농수산물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을 포함하되,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에 한정하여 시행령에 직접 규정함
- 4) 축의금 조의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일반 선물과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받은 경우 각각 가액을 합산하되, 이 경우 상한액을 10만원으로 규정
- 5) 화환조화와 농수산물 선물의 가액 범위에 대한 예외사항을 단서 규정으로 처리하여 입법기술적으로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규정함

나. 선물에서 유가증권 제외(제17조 관련 별표 1)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선물에서 제외

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제25조 관련 별표 2)

- 1)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급별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최고 상한액 40만원 내에서 기관별로 자율적 운영
- 2)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사이, 일반 언론사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사이의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한 상한액 설정

라.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제26조)

- 1) 외부강의등의 신고사항 중 유형(제2호), 사례금 총액 및 상세명세는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괄호 부분(제4호) 및 요청사유(제5호)를 삭제
- 2) 보완 신고 기산점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에서 신고 제외 사항을 ‘안 날부터’로 정비, 신고기간을 ‘2일’에서 ‘5일’로 연장(제26조제2항)

마.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부담 완화(제42조제3항)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직자등으로부터 법 준수 서약서를 받는 주

기를 ‘매년’에서 ‘신규로 임용 채용하는 경우’로 한정
바. 규제외 재검토 삭제(제45조)

경조사비 선물 가액 범위,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타당성을 기한
내에 검토 보완하였으므로 규제외 재검토 조항 삭제

20.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12. 14. ● 마감일자 : 2018. 01. 23.

○ 해수욕장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사업의 시행자격을 확대하고, 해수욕장 준수사항 관련 규정 정비와 다양한 우수 해수욕장 육성을 위해 선정분야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등 법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자격 확대 (안 제36조제2항)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시설사업 시행자격을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민간기업에도 개방하도록 하여 해수욕장 시설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나. 해수욕장 준수사항 정비 (안 제22조제1항)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만 해수욕장 입수를 허용함에 따라 폐장이후에는 사실상 입수가 제한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입수 시간과 장소를 제한 하는 규정을 개정 기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원칙적으로 사계절 해수욕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백사장에서 무선 동력놀이기구 사용이 무조건 금지되던 것을 대회개최, 구조, 방송 등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허가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특색있는 해수욕장 육성을 위한 관리권한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조례로 해수욕장 준수사항을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조항을 신설하도록 함.

다. 우수 해수욕장 선정분야 시행령 위임 (안 제39조제2항)

우수해수욕장 선정분야가 관리 우수와 시설개선 시급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해수욕장 이용 환경 변화에 따라 우수해수욕장 선정분야의 탄력적 운영이 곤란하여, 법에서 규정하는 우수해수욕장 선정 분야

를 시행령으로 위임하도록 하여 해수욕장 육성 정책이 이용자의 추세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다양한 평가 분야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함.

21.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12. 14. • 마감일자 : 2018. 01. 23.

○ 해수욕장 평가 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위원회 정원을 확대하고, 해수욕장 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해수욕장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법」과 통일하여 해수욕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가.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정원 확대 (안 제22조제1항)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정원 10명 중 당연직 정부위원이 7명에 달해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해수욕장 평가에 반영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정원을 15명으로 확대하고 신규 정원 5명을 위촉직 민간위원으로 선임하도록 개정함.

나. 해수욕장 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완화 (안 별표3의1)

화장실, 환경시설의 설치개수를 백사장의 길이와 이용자 규모, 쓰레기 발생량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최근 거의 이용하지 않는 식수대 설치의무는 삭제하는 한편, 시설물 관리시기는 삭제하여 연중 상시 관리를 하도록 하여,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

다.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비 기준 정비 (안 별표3의1)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주로 사용하는 수상오토바이를 보유 안전장비의 종류에 추가하고, 보유대수는 전체 장비의 합산 수량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이 되는 이용자의 수를 연간에서 3년 평균이용객으로 변경하여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함.

라. 해수욕장 흡연에 대한 과태료 금액 조정 (안 별표4)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해수욕장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을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과 일치되게 10만원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22.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7. 12. 14. • 마감일자 : 2017. 12. 26.
- 여성일자리 창출 등 부 내 일자리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등 가족정책 및 여성 권익증진 관련 국정과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부 내 하부조직의 명칭과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2. 14. • 마감일자 : 2018. 01. 23.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에 의무설치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범위를 확대하여, 독거노인의 고독사나 응급상황에 대한 조기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가. 별표 1 제4호 비상연락장치에 일정기간 동작이 없는 경우 자동연락되는 장치를 추가(안 별표 1)
국민 영구 행복주택 중 주거약자용(장애인,고령자,유공자) 주택에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거약자용 주택에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작이 없으면 관리소등으로 자동연락되는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4. 군표창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12. 14. • 마감일자 : 2018. 01. 23.
- 군 표창권자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부서의 장으로 확대되고, 불필요 표창인 정근상이 제외되는 등 「군표창규정」이 개정('17. 9.19.공포) 됨에 따라 확대된 부대·부서장의 범위를 규정하고, 정근상

등 불필요 내용 삭제 및 일부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임.

○가. ‘정근상’ 관련 내용 삭제

나. 군 표창권자 :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부서장의 범위 규정

- 부대의 장 : 각 군의 중대급 이상의 부대
- 부서의 장 : 합참(본부장·단장), 연합사(부사령관·부참모장·부장·차장) 각군본부(참모부장·실장·단장, 병과장), 육군(야전군·2작전사 참모장)

※ 단, 감사장은 장성급 부대·부서의 장으로 함.

다. 기타 : 불필요 조항 삭제 / 일부 내용 수정

- 1) 표창장(전공·공로·선행), 상장(우등·문화)구분 : 삭제
- 2) 추천권자 : 장교 → 표창권이 없는 부대·부서장으로 수정
- 3) 표창의 시기(정기표창은 매년 10월1일) : 삭제
- 4) 장관급 장교 → 장성급 장교로 수정
- 5) 공적상의 비율 수정 : 장관(연간계획에 반영), 합참이하는 위임
- 6) 부대표창의 범위 수정 : 장관이하 부대표창 사단·전단·비행단급 이하부대 → 장관부대표창은 사단·전단·비행단급이상부대, 합참이하는 위임
- 7) 표창추천기일 : 삭제
- 8) 삭제 : 별표 1호(공적상의 비율)
- 9) 수정 : 별지 1·2·3·4·5호(각종 서식)

2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7. 12. 14. • 마감일자 : 2018. 01. 24.

○ 국립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에 맞추어 시행령을 정비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국립묘지 종합관리 계획 수립을 위하여 수립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 변경하며, 국립묘지 관리소장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위임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26.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2. 15. • 마감일자 : 2017. 12. 21.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의 자동차관리관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소관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국정과제인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전담부서 조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던 배출권거래제 운영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7. 0. 0. 공포, 2017. 0. 0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토교통 부문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래전략담당관에 일자리 관련 사무를 분장하면서 부서명을 변경하고, 항공교통 분야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항행안전팀을 폐지하는 등 항공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을 증원하면서 임기제공무원의 수를 조정하고, 효율적인 민자도로 관리를 위하여 민자도로 운영·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 소관사무로 분장하며, 지방하천 관련 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국토관리청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등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7. 뇌연구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7. 12. 15. • 마감일자 : 2018. 01. 26.

- 뇌은행이 확보한 뇌연구자원(뇌조직)을 뇌과학분야 연구자들에게 적법하게 분양·공급할 수 있도록 뇌은행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뇌연구를 활성화하고자 함.

뇌신경융합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윤리적, 사회적, 법률적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뇌신경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와 관련된 조사, 연구 등을 위한 뇌신경윤리정책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뇌은행을 개설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뇌은행의 인력·시설·장비기준 등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효율효전효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뇌연구자원의 확보를 위한 윤리적인 절차와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뇌연구자원의 취급·보존·제공·폐기 등에 대한 사항을 뇌은행 윤리지침으로 고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 뇌연구자원 및 뇌은행에 대한 정의 추가(안 제2조 제5~6호 신설)

현행 법률에 없었던 뇌연구자원 및 뇌은행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뇌은행 및 뇌연구자원 분양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 마련.

나. 뇌신경윤리위원회 및 뇌신경윤리정책센터 설치(안 제6조의3 내지 제6조의4 신설)

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뇌신경융합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사회적, 법률적 문제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뇌신경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하여 뇌신경윤리정책센터를 지정하거나 공모할 수 있음.

다. 뇌은행 운영을 위한 허가제 도입 및 인력·시설기준 등 마련(안 제15조의1 신설)

뇌은행 개설을 위한 허가제를 도입하고, 뇌은행의 인력·시설·장비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뇌은행 운영현황을 관련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여 그 정보를 관계부처 등과 공유하고자 함.

라. 뇌연구자원을 제공받기 위한 서면동의(안 제15조의2 신설)

뇌은행의 장은 뇌연구자원을 제공받으려면 기증희망자 또는 유족으로부터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서면동의 내용에는 연구목적, 개인 정보 보호 및 처리, 뇌연구자원의 제공범위 및 보존관리·폐기, 동의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마. 뇌연구자원의 관리(안 제15조의3 신설)

뇌은행의 장은 연구자가 분양을 신청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제공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세부 절차와 내용은 뇌은행 윤리 지침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윤리지침에는 뇌연구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윤리적으로 필요한 절차와 임상정보 수집, 개인정보 보호, 뇌연구자원의 취급과 관리 및 뇌은행의 의무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바. 뇌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및 지원(안 제15조의4 신설)

뇌연구자원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지원 하기 위하여 뇌연구자원 정보센타를 지정할 수 있음.

사. 뇌은행 등에 대한 지원(안 제18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뇌연구를 지원 촉진하기 위하여 뇌은행, 뇌신경 윤리정책센터 및 뇌연구자원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아. 뇌연구자원 기증자에 대한 예우(안 제19조 신설)

뇌연구자원 제공에 동의한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8.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7. 12. 15. • 마감일자 : 2018. 01. 26.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부위원에 혁신성장의 핵심주체인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을 추가하고 국가지식 재산기본계획 수립 및 점검·평가시기를 현실화하여 정책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추가(안 제4조 개정)
 - 중소벤처기업은 혁신성장의 주체이고, 특허 등 지식재산이 중소벤처기업 성장에 주요소임을 고려하여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장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부위원으로 추가
- 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소관분야의 지식재산에 관한 계획과 시책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국무총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변경(안 제9조 개정)
- 다.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수립 시기 및 점검·평가 시기 조정(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개정)
 - 예산반영 및 전년도 사업성과 등에 기반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 기간을 매년 7월31일에서 10월 31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지침에 따라 소관분야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시기를 매년 10월 15일에서 다음해 1월 15일로,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확정 통보하는 시기를 매년 12월 31일에서 다음해 3월 31일로 조정

- 시행계획 추진상황의 점검·평가를 위한 점검 및 평가지침 마련 통보를 6월30일에서 10월31일로,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이 지침에 따라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기간을 다음해 1월 31일에서 1월 15일로, 위원회가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 등을 통보하는 기간을 다음해 3월 15일에서 3월 31일로 변경하여 내실있는 점검·평가를 수행

2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12. 15. ● 마감일자 : 2018. 01. 24.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4호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 등이 판매원 등에게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33조)에서 금액 수준을 정하면서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구입비, 교육비 3가지 유형만을 구분하고 있어 다른 유형의 비용 또는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금지되는 행위가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 제33조제4호에 제1호에서 제3호 이외의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는 경우를 신설하려는 것임.

30.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 예고일자 : 2017. 12 18. ● 마감일자 : 2018. 01. 29.
- 「여권법 시행령」 제39조(수수료) 별표 구분란 ‘3. 기타’ 라목 ‘여권 사실증명’ 에 사실증명 업무의 구체 항목(△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발급,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발급, △여권 실효 확인서 발급) 및 ‘여권 사본증명’ 업무를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여권 사실증명 및 사본증명 신청시 수수료가 징수되는 사실을 알게 하고자 함.

○ 영 제39조 별표 수정

- ‘여권 사실증명’ 에 사실증명 업무의 구체 항목(△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발급,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발급, △여권 실효 확인서 발급) 및 ‘여권 사본증명’ 업무를 추가적으로 명시

3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12. 18. • 마감일자 : 2017. 12. 21.

-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업인 단체의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을 대변인 분장사무에서 농촌정책국 분장사무로 조정하고, 식품산업정책실 밑에 두는 창조농식품정책관을 농업생명정책관으로 변경하며, 국정과제인 ‘신기후체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전담부서 조정에 따라 식품산업정책실 분장사무 중 농업·임업·축산업·식품 분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 할당 등 집행관리, 조기감축실적 인정 및 평가·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관련 인력 중 5급 정원 1명을 감축하여 환경부로 이관하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 4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성과평가대상 한시조직으로 설치·운영 중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백신연구센터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동물계류검역 및 검역탐지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특수검역과의 4급 또는 5급 정원 1명을 4급 정원 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시민의 귀농·귀촌 등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이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에서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로 이관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과간 업무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 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렬에 수의연구관을 추가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방호 9급 정원 1명을 행정 9급 1명으로, 기계운영 9급 정원 1명을 공업 9급 1명으로 직렬을 전환하고, 수의7급 1명을 시

간선택제로 전환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DB 구축을 위해 전산직렬을 확대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운영 중인 기구 및 정원에 대해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등 그 밖의 현황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7. 12. 18. • 마감일자 : 2018. 01. 29.

○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를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국민주택에서 민영주택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5034호, 2017.10.31. 공포)됨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을 위한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보훈처장이 특수임무유공자의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동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사무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려는 것임.

○가. 특수임무유공자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제59조 개정)

나. 국가보훈처장이 사무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명시(제65조의3 및 별표 2의2 신설)

특수임무유공자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피요청기관의 장 등을 규정함.

3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7. 12. 18. • 마감일자 : 2018. 01. 29.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제24조의2 및 이 조제2항에 따라 채용 또는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받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의 채용 또는 고용으로 보도록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을 명시하고, 5·18민주유공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를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국민주택에서 민영주택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을 위한 선정 기준, 신청 및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보훈처장이 5·18민주유공자의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등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동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사무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려는 것임.

○ 가.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을 채용 또는 고용한 것으로 보는 장애등급을 명시(제16조제3항 신설)

나. 5·18민주유공자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안 제53조 개정)

다. 국가보훈처장이 사무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명시(제59조의3 및 별표 5 신설)

5·18민주유공자 등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피요청기관의 장 등을 규정함.

3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7. 12. 18. • 마감일자 : 2018. 01. 29.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4항 중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1급·2급·3급·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보도록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을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동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사무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려는 것임.

○ 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을 채용 또는 고용한것으로 보는 장애등급을 명시(제9조의8 제1항 일부개정)

나. 국가보훈처장이 사무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명시(제15조의3 및 별표 5 신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피요청기관의 장 등을 규정함.

3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7. 12. 18. • 마감일자 : 2018. 01. 29.

○ 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

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033호, 2017.10.31. 공포)됨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을 위한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의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동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사무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려는 것임.

○가. 참전유공자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제87조 개정)

나. 국가보훈처장이 사무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명시(제17조의2 및 별표 2 신설)

참전유공자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피요청기관의 장 등을 규정함.

3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7. 12. 18. ● 마감일자 : 2018. 01. 29.

○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031호, 2017.10.31. 공포)됨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을 위한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보훈처장이 보훈보상대상자의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동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사무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려는 것임.

○ 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제80조의2 신설)

나. 국가보훈처장이 사무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명시(제83조의2 및 별표 9의2 신설)

보훈보상대상자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피요청기관의 장 등을 규정함.

3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장)

• 예고일자 : 2017. 12. 18. • 마감일자 : 2018. 01. 29.

○ 국가유공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를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국민주택에서 민영주택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5028호, 2017.10.31. 공포)됨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을 위한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의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동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사무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려는 것임.

○ 가. 국가유공자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선정 기준, 신청 및 선정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제87조 개정)

나. 국가보훈처장이 사무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명시(제97조의2 및 별표 9의3 신설)

국가유공자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피요청기관의 장 등을 규정함.

3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7. 12. 18. • 마감일자 : 2018. 01. 29.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5030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비용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의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장이 사무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려는 것임.
- 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독립유공자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제16조의2 신설)
 - 나. 국가보훈처장이 사무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명시(제39조의3 및 별표 3의2 신설)
독립유공자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피요청기관의 장 등을 규정함.
 - 다. 묘지관리 비용의 지원에 관한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제4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3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7. 12. 18 • 마감일자 : 2018. 01. 29.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및 시행령 제16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묘지 관리에 드는 비용 신청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 묘지 관리 비용의 신청

- 1)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묘지 관리에 드는 비용을 신청하기 위한 신청방법, 신청서식,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마련

40.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12. 18. • 마감일자 : 2018. 01. 29.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할 수 있는 자격 취득 및 유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함

○ 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자격 취득 교육 강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시간을 36시간에서 144시간으로 확대함

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근로자의 보수교육 신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근로자는 5년마다 36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자의 재교육 의무 신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 된 경우에는 다시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함.

4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12. 18. • 마감일자 : 2018. 01. 29.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와 타워크레인 조종자 사이에 신호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아 타워크레인이 서로 충돌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음.

○ 가. 타워크레인 신호수 배치 의무규정 신설

- 1)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에 타워크레인마다 작업자와 조

종자 사이에 신호업무를 하는 자를 두도록 의무화

4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12. 18.
- 마감일자 : 2018. 01. 29.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타워크레인 작업 시 산업재해예방에 중요한 신호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설치·해체 작업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 등 유해·위험 기계등의 대여자와 대여 받은 자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가.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안전보건교육 강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자와 조종자 사이에 신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호수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현행 2시간에서 8시간으로 강화하고 교육내용을 별도로 신설함

나. 타워크레인 등 유해·위험 기계등의 대여자에게 다음의 의무를 부과함

- 1) 타워크레인 등 유해·위험 기계등의 설치·해체 작업 전에 대여받는 자와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것
- 2) 대여받은 자와 설치 해체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 3) 설치·해체 작업자에게 장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

다.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 1) 타워크레인이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충돌 방지장치 설치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것
- 2)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 작업과정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동안 보관하도록 할 것

4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12. 19. • 마감일자 : 2017. 12. 21.
- 국정과제인 ‘신기후체제 건설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전담부서 조정에 따라 분장사무 중 산업·발전 분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 할당 등 집행관리, 조기감축실적 인정 및 평가·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관련 인력 중 5급 정원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 00. 공포, 0. 0.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일반직임기제(9급) 증원 인력(본부 1명)을 정원에 반영하고, 업무효율성증진을 위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그 밖의 현황과 다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12. 19. • 마감일자 : 2018. 01. 11.
- 부패신고자의 비밀보장 범위를 ‘누구든지’로 확대하고 그 위반자 처벌수준을 상향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보도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경위를 확인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024호, 2017.10.31. 공포, 2018.2.1. 시행)됨에 따라 법률로 상향 규정되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신설된 법률 조항의 인용 조문을 추가하는 한편, 고충민원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조사 없이 종결할 수 있는 세부 유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법률 인용조문 정정(안 제11조)

- 민원사항의 안내 및 상담 업무 규정은 법 제12조제15호에 기재된 기능
이므로 제11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16호” 를 “법 제12조제15호” 로
정정
- 나. 고충민원 종결처리 유형 명확화 및 신청인 안내(안 제43조)
 - 고충민원 종결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41조제1항 제2호(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와 제3호(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세부 유형을 6
개로 구분하여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로 명확히 규정함
 - 권익위원회는 종결 처리를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문서로 안내통
지하여야 함
- 다. 법률 개정 후속 조치로 인용조문 조정 등(안 제69조, 제70조, 제90조의
2)
 - 부패신고자 신분공개 시 권익위의 경위확인 및 징계 요구 내용이 법 제
64조로 통합되어 상항 입법되었기에 시행령 제69조를 삭제함
 - 법 제64조가 제64조·제64조의2로 분리됨에 따라 시행령상 인용 조문을
규정하고 있는 제70조와 제90조의2에 반영함

45.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12. 19. ● 마감일자 : 2017. 12. 21.
- 대통령비서실의 서신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종합민
원사무소에 2019년 12월 31일 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특별민원
심사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1
명, 7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
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부패방지국에 두는 청탁금지해석과의 존속기
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부패방지정책기능을 강
화하기 위하여 사무처의 하부조직의 편제 순서를 조정하면서 하부조
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7. 00. 00. 공포·

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의 업무분장과 증원 또는 감축되는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7.26. 공포·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부 용어를 변경하며, 위원회 정부혁신 관련 업무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6.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7. 12. 20. • 마감일자 : 2017. 12. 26.
- 주민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시 주민의 연서(連署)를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 여부를 포함시키는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내용을 서식 등에 반영하려는 것임
- 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란 추가(별지 제1호 서식)
- 나.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3조제2항 인용 부분 수정(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4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12. 20. • 마감일자 : 2018. 01. 30.
- 종래의 포승이 사용방법이 복잡하여 다수의 수용자들에게 사용해야 하는 출정 등의 경우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사용 시 분진이 발생하거나 오염되기 쉬운 면사재질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용방법과 재질 등을 개선한 벨트형포승을 신설하고 실제 사용빈도가 낮은 개인포승을 삭제하며 머리보호 장비의 재질, 모양 등 규격을 개선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포승 중 개인포승을 삭제하고 벨트형포승을 신설(안 제169조 제8호)
 - 1) 개인포승은 교도관이 휴대하는 보호장비이나 실제 호송 등 업무에 사용되지 않는 실정임
 - 2) 보호장비의 하나인 포승은 사용방법이 복잡하여 다수의 수용자들에게 사용하는 출정 등의 경우에 비효율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면사재질에서 분진이 발생하거나 쉽게 오염되는 문제점이 있음
 - 3) 이에 따라, 개인포승을 삭제하고 일반포승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나일론 재질의 벨트를 버클식으로 고정하는 벨트형포승을 신설함
- 나. 개인포승 규격 및 사용방법 규정을 삭제(현행 별표5제8호, 제179조제3항)하고, 벨트형포승의 규격 및 사용방법을 추가함(안 제179조제1항제2호, 별표5제8호 및 별표20)
 - 1) 개인포승을 삭제함에 따라 개인포승의 규격 및 사용방법 규정을 삭제함
 - 2) 벨트형포승의 신설에 따라 그 사용요건을 일반포승 사용요건과 같이 규정하고, 보호장비의 규격을 정한 별표5에 벨트형포승의 형태, 재질, 규격, 구성을 추가하고 별표20 벨트형포승의 사용방법을 신설함
- 다. 머리보호장비의 규격 및 사용방법을 변경(안 별표5제2호 및 별표9)
 - 1) 현행 머리보호장비가 사용자의 두부를 압박하고 표면 비닐코팅으로 땀이 차거나 변형되는 점을 개선하여 폴리우레탄 재질에 환기성을 높인 머리보호장비로 개정함
 - 2) 보호장비의 규격을 정한 별표5제2호의 머리보호장비의 형태, 재질, 규격, 구성을 변경하고 별표9에서 사용방법을 변경함

48.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12. 20. • 마감일자 : 2017. 12. 21.
-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려는 것임

○가.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안 제214조제1항제1호)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한 금액 및 물품을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함.

49.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12. 20. • 마감일자 : 2018. 01. 29.

○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를 통계작성 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목록에 포함하여 통계청장이 검토하도록 하고, 이 경우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50.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12. 20. • 마감일자 : 2018. 01. 29.

○ 통계작성 승인 신청시나 자료제출명령, 실지조사 등을 하기 전에 행정자료의 활용 여부를 우선 판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계법」이 개정(법률 제14843호, 2017. 8. 9. 공포, 2018. 2. 10. 시행)됨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여부를 판단하거나 통계청장에게 그 판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통계작성 승인 신청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여부 우선 검토(안 제24조 개정)

1)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작성 승인 신청 전에 행정자료를 검토하여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통계작성 승인시에 첨부하여야 함.

2)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여부의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의뢰하는 경우 요청서를 작성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고, 통계청장은 판단 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실지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안 제41조의2 신설)

- 1)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조사 또는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문서로 요청하도록 함.
- 2)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대해 이를 확인하여 통보하도록 함.

다. 통계 공표 시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 표시 병행(안 제42조 개정)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제공 등 통계 결과 공표 시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를 함께 표시하도록 함

51.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12. 20. • 마감일자 : 2017. 12. 22.
- 새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15명(8급 5명, 9급 10명)을 증원하고자 함

5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12. 21. • 마감일자 : 2018. 01. 30.
- LPG 연료 사용제한 규제 완화가 확대되어 일반인의 LPG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과거 LPG사용제한 위반 시 엄격히 적용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비례의 원칙에 맞게 재정비 필요
LPG 연료 사용 제한 위반 시 위반횟수에 따라 경고 및 과태료 차등 부과하여 비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기회 부여 및 과태료 경감을 통해 지원대상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LPG연료사용제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영 별표4)
 - LPG연료사용제한 위반 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적용 및 과태료 상한액 감경

-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하여 과오나 필연적인 사정으로 인한 세대분리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차·3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차수별 차등 적용
- * 1차 위반(경고) → 2차위반(100만원) → 3차위반(200만원)
- 법률 상 과태료 최대금액인 300만원을 타 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게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감경

53.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12. 21. • 마감일자 : 2018. 02. 01.
- 「모자보건법」(법률 제15186호, '17.12.12. 개정, '18.3.1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가족계획사업 용어를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급상황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입지관련 세부 설치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가족계획사업 용어 삭제(안 제2조)
 -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산후조리원 및 산후조리도우미가 모두 없을 것 등 입지관련 세부 설치기준 삭제(안 별표 2의2)

54.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12. 21. • 마감일자 : 2018. 01. 30.
- 지방공무원에 대해 능력과 성과중심 인사 관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변경하여 학력, 신체사항 등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공무원 사후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
- 가. 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자구 수정 (안 제6조제2항)
 - 나. 경력증명서 발급 대상자 명확화 (안 제21조제2항)
 - 다.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기록요약서 서식 변경 (안 별지 제2호 및 제29호 서식)

55.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12. 21.
- 마감일자 : 2018. 01. 30.

○ 가. 제명의 변경

직업안정법 이 소극적 직업소개에서 적극적 “고용서비스”의 기본 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명을 직업안정법 에서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로 변경하고자 함

나. 고용서비스의 대상 및 모집의 대상 확대

법령의 적용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모집의 대상을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하고자 함

다. 국가와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고용지원기관의 고용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고용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 및 자치단체가 협조할 수 있도록 함

라. 공공 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 원칙 수립

국가 및 자치단체가 고용서비스 관련 업무를 위탁할 경우 적정한 위탁의 조건을 보장하고, 위탁 기관의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다년간 위탁계약의 체결 및 위탁의 계속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함

마.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무 신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 등록 전에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사업 등록 후에도 주기적인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업상담원도 주기적으로 직무 교육 받도록 함

사.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등록제 변경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며,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 전에 실무교육을 받도록 함

아. 모집 위·수탁 서류 공개 요청권 신설

구직자에게 모집의 위·수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공개를 요

청할 수 있도록 하여 모집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5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12. 22. • 마감일자 : 2018. 01. 11.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인상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경제변화 등에 맞추어 조정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 영업권 보장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확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되는 환산보증금액을, 서울특별시는 4억원 이하에서 6억1천만원 이하로,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는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등은 2억4천만원 이하에서 3억9천만원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1억8천만원 이하에서 2억7천만원이하로 각 증액함(안 제2조제1항).
- 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한도 인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한도를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 이하에서 100분의 5 이하로 인하함(안 제4조).

57.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2. 22. • 마감일자 : 2018. 02. 05.
-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11.29)’ 발표에 따라 청년층에게 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입주기준을 정비하여 청년 실업 등으로 주거비 감당이 어려운 청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함
- 가. 청년 수혜계층 확대
청년층의 경우 현재 대학생, 사회초년생으로 제한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만19세 이상 39세에 해당하는 청년 모두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함
- 나. 신혼부부 자격 완화
소득활동 요건을 삭제하고 혼인기간 제한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

여 소득활동 증빙이 어렵거나 또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신혼부부나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함

다. 청약가능지역 제한 완화

청약가능지역에 순위제를 신설하여 1순위는 신청자의 학교, 직장 또는 거주지가 주택건설지역이 소재한 광역권에 있는 경우로 하고, 2순위는 그 외의 지역으로 하여 지역제한 없이 모두에게 청약 기회 부여

라. 입주자 선정 후 남은 행복주택에 대한 입주자격 완화 규정 마련

입주자 선정 후 남은 행복주택이 있는 경우 입주자격 중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공실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근거 규정 마련

5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12. 22. • 마감일자 : 2018. 02. 01.

○ 친족분리 요건에 부당지원행위 등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친족분리 회사와 모기업집단 간의 거래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친족분리 회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한편, 임원이 소유·지배하는 회사가 독립경영 요건을 갖춘 경우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용이 보다 기업경영의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함

○ 가. 친족분리 요건 강화(안 제3조의2 제1항 제2호 바목 신설)

- 친족분리 요건에 동일인 측과 독립경영자 측 간의 거래(계열제외일 전후 3년)에 있어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치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추가하고 친족 분리 후 5년 이내에 부당지원행위 적발 시 친족분리를 취소

나. 친족분리 신청 시 및 분리 후 3년 간 모기업집단과의 거래내역 제출 의무화(안 제3조의2 제4항 제4호, 안 제3조의2 제6항, 안 제3조의2 제3항 제2호 신설)

- 친족분리 신청 시 직전 3년간 모기업집단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친족분리 이후 3년간 매년 모기업집단과의 거래내역 제출하도록

- 의무화하는 한편,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시 친족분리를 취소
- 다.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 도입(안 제3조의2 제1항 제2의2호 신설, 안 제3조의2 제4항)
-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선임 이전부터 소유·지배하던 회사로서 동일인측 계열회사와 출자, 채무보증, 자금대차, 임원겸임이 없고 거래비중이 50% 미만인 회사에 대하여 계열분리를 인정

59.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12. 22. • 마감일자 : 2018. 01. 31.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대표자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삭제하는 한편, 유·무료 직업소개 사업 신고확인증 등의 자산현황·사무실 면적 기입란을 삭제하고, 무료직업 소개사업 신고서 등에 민원인 연락처 기입란을 추가함